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 안 제13조제2항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률 저하 또는 사업의 중도 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그런데 현행법 제13조제1항¹⁾은 폐업지원금 등을 ‘제11조에 따라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3조 제2항은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안 제13조 제2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법 조문체계에 맞춰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13조제2항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1. 2.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어업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박 병 섭)